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24
----------	-------

발의연월일 : 2025. 10. 30.

발 의 자 : 박균택·박 정·허 영
황명선·박정현·박지원
이건태·김주영·박홍배
한민수·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보관하는 절차 및 금품 전달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이 보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해당 보관금을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 논란이 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음.

최근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에 대한 모금 독려 끝에 거액의 보관금이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음.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선동하는 것이자 그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

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휴대금품의”를 “휴대물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휴대금품을”을 “휴대물품을”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휴대금의 보관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낸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원(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②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을 담아두는 계좌의 한도는 개인당 4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각 1개월 동안 보관금 계좌로 입금되는 총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④ 그 밖에 보관금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해당 월
보관금 입금 총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에”를 “제25조 및 제25조의2에”로, “휴대
금품을”을 “휴대물품 및 보관금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u>휴대금품의</u> 보관 등) ① 소장은 수용자의 <u>휴대금품을</u>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 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 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 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제25조(<u>휴대물품의</u> 보관 등) ① ----- <u>휴대물품을</u>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u>휴대금의</u> 보관 등) ① <u>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u> <u>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u> <u>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법령에</u> <u>따라 수용자에게 보낸 전달금,</u> <u>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가</u> <u>받을 수 있는 금원(이하 “보관</u> <u>금”이라 한다)을 교정시설에</u> <u>보관한다.</u> ② <u>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u> <u>용할 수 있는 보관금을 담아두</u> <u>는 계좌의 한도는 개인당 400</u>

	<u>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한다.</u>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각 1개월 동안 보관금 계좌로 입금되는 총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 <u>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u> <u>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u> <u>④ 그 밖에 보관금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 ----- ----- ----- -----.

